

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4일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휴대번호	
	사업장 소재지		전화번호	

시설관리기준 변경			
배출공정	시설 관리기준	변경하려는 시설	사 유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